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11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5일, 김용연 의원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(2020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용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제1항제7호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1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내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¹⁾ 따른 법정필수기구로서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,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,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학교 부지내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,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및 정책결정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점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절차로 사료됩니다.

- 특히 지난 2020년 9월 24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서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의 협의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만큼 동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다른 조례의 규정을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.²⁾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재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

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

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
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
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